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34
----------	------

2021년 3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총 108명 (7,519명 → 7,627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89명(6,967명 → 7,056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19명(546명 → 565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08명 (7,519명 → 7,627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89명 (6,970명 → 7,059명)

· 5급 이하 소계: 증 90명 (6,888명 → 6,978명)

· 전문경력관 소계: 감 1명(9명 → 8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19명 (546명 → 565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496명 → 515명)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34호로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총액인건비¹⁾ 기준인원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학교정책과-318, 2021.1.14.) 따른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는 6,238억 2천 1백만원으로,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5,635억 5천 3백만원보다 60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7,059명, 교육전문직 565명 등 총 7,627명으로 책정하였는바, 현행 정원²⁾ 보다 108명이 증가한 규모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의 확정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기존 보다 89명이 증가한 7,059명으로 조정하고,³⁾ 교육전문직은 기존 보다 19명이 증가한 565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범위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총 정원 7,519명(일반직 6,967명/교육전문직 546명 등)

3) 감소되는 전문경력관은 마포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로 현재 공로연수 중임(2021년 6월 30일자 정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19” 를 “7,627”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967” 을 “7,056”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46” 을 “565” 로 한
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6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059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978				
전문경력관 소계	8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565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